

NEWSLETTER

중대재해 대응센터 | Serious Accident Response Center

CONTACT



중대재해 대응센터장
김후곤
T: 02.6386.6230
E: hoogon.kim@leeko.com



ESG센터장 시민석
T: 02.6386.0852
E: minseok.si@leeko.com



고문 신인재
T: 02.6386.7984
E: injae.shin@leeko.com



변호사 설동근
T: 02.772.4881
E: tongkeun.seol@leeko.com



변호사 송현석
T: 02.772.4691
E: hyunseok.song@leeko.com



변호사 조혜인
T: 02.6386.6319
E: haein.cho@leeko.com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 새로운 안전보건공시제도 및 위험성평가시스템 구축해야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026. 1.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제와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과 위험성평가제도 강화를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및 실천을 강화하여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개정안의 핵심 포인트와 시행 일정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 도입 (제10조의2 신설, 2026. 8. 1. 시행)

- **상세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공공 기관은 매년 ① 안전보건관리체제, ②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③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당해 년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⑤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 등을 공시해야 함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법인)는 2026. 8. 1. 시행 즉시 적용되며, 300명 이상 사업주(법인)는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예상됨

- **제재:** 공시의무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제175조 제4항 제1의2호)

■ 실무적 시사점

- 안전보건 투자 규모가 공시 항목에 포함되므로, 기업은 회계 처리 시 안전 관련 비용을 별도로 집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공시항목, 공시방법, 시정 및 보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었으므로, 향후 입법동향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제23조 제2·3항 신설, 2026. 8. 1. 시행)

- **주요 변화:**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함

- 사업장 감독 참여: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 감독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실무적 시사점: 노사 간의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의 이슈 발생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평소 명예감독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협력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3.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 개정 및 과태료 신설 등 (제36조 개정, 단계적 시행)

■ 주요 변화

- ① 위험성평가 개념 정비 및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신설: 위험성평가를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으로 명시하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까지 포함하도록 정의규정 개정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175조 제4항 제2의2호)
- ② 근로자 참여 의무화: 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제175조 제5항 제1호)하되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
- ③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신설: 근로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175조 제5항 제1호)
- ④ 설명회 등 개최 의무: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 제5항 제1호)
- ⑤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 주지 노력: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함(과태료 조항 없으나 중대재해발생시 처벌이유가 될 수 있음)
- ⑥ 기록 및 보존 의무에 대한 과태료 신설: 위험성평가의 결과 기록 및 보존해야 하며,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 제6항 제2의2호)
- ⑦ 하위 법령 위임 확대: 舊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을 폐지하고,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을 높임
- ⑧ 단계적 적용: 위험성평가에 관한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부터 적용되지만 올해 시행하는 모든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에 적용될 것이며, 과태료 규정은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2027. 1. 1.부터, 상시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2028. 1. 1.부터 시행

■ 실무적 시사점

- **(근로자 참여 의무화, 설명회 등 개최 의무)** 위험성평가 회의록, 설명회 등 개최 시 참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의견 개진 내용, 교육자료와 사진을 기록으로 남겨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대책을 적절히 공유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근로자대표가 참여 요청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참여 요청 및 승인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록 및 보존 의무)**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만큼 가급적 전자적 방법(안전관리 시스템 등)으로 기록하여 누락이나 소실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는바, 위험성평가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3년 보존)에도 불구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할 것임
- **(하위 법령 위임 규정 정비)** 舊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과 새롭게 제정될 고용노동부령의 세부 절차를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규정에 맞추어 위험성평가 절차서 등을 업데이트해야 함

4. 재해조사 대상 확대 및 보고서 공개 (제56조 개정, 제56조의2 등 신설, 2026. 6. 1. 시행)

- '중대재해등' 조사 대상 확대: 기존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재해등)까지 원인 조사가 확대
-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 조사 실시 근거 신설: 재해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자료 제출 요청 등의 권한을 명문화
-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및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후 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공소 제기 여부 와 관계없이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고 공개 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
- 단계적 적용: '중대재해등' 조사 대상 확대는 2026. 12. 1. 이후 발생하는 산업 재해부터 적용하며,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및 공개는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
- 실무적 시사점: 재해조사보고서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원인 규명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5.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원 계획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기존의 산업안전 · 중대재해팀을 '중대재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형사와 행정 그리고 경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얹힌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정교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근로감독관 출신의 노무사, 기업 내 안전관리 실무를 두루 경험한 전문 자격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현장에 즉각 출동하여 수사부터 재판까지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지금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장이 운영 중인 산업안전 Compliance 컨설팅 프로그램은 기업이 법령상의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스크 관리 솔루션입니다. 수많은 지도 · 점검과 사고 처리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기업의 안전보건 체계를 정밀 진단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장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레터 | 고용노동부,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시행 

관련 보도 |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서초,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